

[별표 7] <개정 2004.4.20, 2006.5.3>

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(제8조제1항제5호관련)

1. 시설기준

가.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

(1) 경계책

기화장치의 주위에는 경계책을 설치할 것

(2) 밸브등의 보호

저장탱크 또는 이에 부착된 배관의 밸브등을 조작할 때에는 밸브의 재질·구조 및 상태를 감안하여 과대한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(3) (1) 및 (2)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(2)·(3)·(4)(가)·(4)(다) 내지 (카)·(5) 내지 (7)·(8)(가)①·(8)(나)·(8)(다)·(10)(배관매설깊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)·(12)·(16)(가)·(16)(다) 내지 (16)(마)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 4 제1호 가목 내지 차목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. 이 경우 별표 4 제1호 다목(2)(라)①중 "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대상지역"은 "액화석유가스저장소"로 본다.

나.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

(1) 구분설치

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구분하여 동일부지안에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되는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

(2) 용기집합시설 설치금지

저장설비는 용기집합식으로 하지 아니할 것

(3) (1) 및 (2)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(2)·(3)·(11)·(12)·(16)(다)·(16)(라)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, 별표 4 제1호 차목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 5 제1호 가목·라목·마목·바목·아목·자목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

다.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(다만, 30 L 이하의 용접용기에 한한다)

(1) 안전거리

용기보관실외의 용기저장소(이하 "실외저장소"라 한다)에서 용기를 집적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실외저장소의 경계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 가목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

(2) 경계책

실외저장소 주위에는 경계책을 설치하고, 경계책과 용기보관장소 사이에는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

(3) 구분보관

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의 보관장소는 1.5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구분할 것

(4) 소화설비

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갖추 것

(5) 용기보관장소의 바닥

(가) 지표면아래의 장소에 용기를 보관하지 아니할 것

(나) 바닥으로부터 3m 이내의 도랑이나 배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 재료로 이중 복개할 것

(다) 움푹패인 곳은 적절한 재료로 포장하거나 메워 평평하게 할 것

(6) 용기군 사이의 통로

(가) 용기의 단위 집적량은 30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(나) 팔렛트에 넣어 집적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2.5m 이상 일 것

(다) 팔렛트에 넣지 아니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1.5m 이상 일 것

(7) 집적된 용기의 높이

(가) 팔렛트에 넣어 집적된 용기의 높이는 5m 이하일 것

(나) 팔렛트에 넣지 아니한 용기는 2단 이하로 쌓을 것

(8) (1) 내지 (7)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(2)·(3)·(12)(나)·(16)(다)·(16)(라)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 4 제1호 차목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

2. 기술기준

가.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

(1) 저장탱크의 온도유지

저장탱크는 항상 40℃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

(2) 저장설비에의 출입

저장설비내에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는 방폭형등화를 휴대할 것

(3) (1) 및 (2)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

별표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·라목(1)·라목(3)·사목 및 아목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의할 것

나.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

별표 5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할 것

다.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

(1) 용기보관장소의 경계내에서 용기를 보관할 것

(2) 용기는 세워서 보관할 것

(3) 충전용기는 항상 40℃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눈·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